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60,900,000	19,827,000
일반회계	616,549,277	18,496,478
특별회계	44,350,723	1,330,522
기타특별회계	44,350,723	1,330,522
상수도사업	2,841,904	85,257
하수도사업	3,329,701	99,891
수질개선	9,740,641	292,219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02,200	12,066
의료급여기금	744,822	22,345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1,868,200	56,046
공영개발사업	1,074,589	32,238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62,711	1,881
행복주택사업	5,248,250	157,448
청사건립사업	13,037,705	391,13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,205,23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